

교직원인사규정

제정 1981. 1. 5.

제18차 개정 2026. 7. 2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을 기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학이념 구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을 말한다.
2. “제청권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각급기관의 교원(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제외한다)과 직원을 말한다.(개정 15.1.6.)
4. “직종”이라 함은 사무직, 기술직 등 직능별 구분을 말한다.(개정 20.6.23.)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01.9.5., 06.5.17., 20.6.23.)
6. “전직”이라 함은 직종변경을 말한다.(호신설 20.6.23.)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기관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 부서이동을 말한다.(개정 06.5.17.)(호변경 20.6.23.)
8. “교류”라 함은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각급기관간의 인사교류를 말한다.(호변경 20.6.23.)
9. “강임”이라 함은 차하위 직급으로 강등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호변경 20.6.23.)
10.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호변경 및 개정 20.6.23.)
11.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호변경 20.6.23.)
1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호신설 20.6.23.)
13. (삭제 2020.6.23.)

제3조 (교직원의 구분) ①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 자격의 인정을 받고 각급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04.8.10., 20.6.23.)

③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직, 기술직, 별정직, 일반직으로 나눈다. (개정 01.9.5., 14.08.14., 20.6.23.)

1. 사무직 :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기술직 : 사서, 전산, 건축, 전기, 실험기사 등 관련분야 전문기술 또는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04.8.10., 20.6.23.)
3. 별정직 : 병역업무를 수행하는 자(호변경 20.6.23.)
4. 일반직 :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관리운영, 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호신설 14.08.14.)(호변경 20.6.23.)

제4조 (직급의 구분) ①교원의 자격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다.(개정 04.8.10., 20.6.23.)

②직원의 직종별 직급 구분은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03조 별표에 게시한 바와 같다.

제 2 장 임용, 승진과 전보, 인사교류

제5조 (임용의 원칙) 교직원의 임용은 그 자격, 시험성적, 교육경력,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거 선발한 자를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임용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제14조에 의한 임시임용과 계약임용은 각급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01.9.5., 15.1.6., 20.6.23.)

제6조 (결원보충 방법) 각급기관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직, 전보 또는 교류 등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5.1.6.)

제7조 (신규임용) ①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원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전문분야의 자격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04.8.10.)

③신규임용 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1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다. 다만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항신설 06.5.17.)(호변경 및 개정 20.6.23.)

④(삭제 2026.07.29.)

제8조 (승진) ①직급간의 승진은 동일 직종내에 근무하는 바로 하위직급 교직원 중에서 직원인사규정운영내규(이하 “내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년수, 근무성적, 경력평정, 각급기관장의 의견,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자를 이사장이 임용하되,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15.1.6)(개정 26.7.29.)

②교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5.1.6.)

1.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함(개정 20.6.23.)

2. 사무직, 기술직(호변경 및 개정20.6.23.)

가. 3급 이상 - 3년 이상

나. 4급 - 4년 이상

다. 5급 - 5년 이상

라. 6급 - 4년 이상

마. 7급 - 3년 이상

바. 8급 - 3년 이상

사. 9급 - 2년 이상

아. (삭제 20.6.23.)

3. 일반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내지 34조에 의함(신설 15.3.11.)(호변경
및 개정 20.6.23.)

③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전2항의
승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본인의 능력으로 보아 상위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승진임용의 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1.9.5.)

②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급기
관 5급 이상은 2배수로 제청받아 임용할 수 있다.(개정 06.5.17., 15.1.6.)

③직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4.8.10.)

제10조 (인사교류 및 파견) ①임용권자는 법인과 각급기관 교직원의 중장기적 수급
계획의 인적자원 확보, 직급간 불균형해소, 업무능력과 직무기술 향상등 경쟁력
강화와 학교발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6.3.16., 16.8.12.)

②임용권자는 법인과 각급기관의 교직원을 행정업무 지원 및 해당기관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파견할 수 있다.(항신설 16.3.16.)(개정 16.8.12.)(항변경 20.6.23.)

③인사교류는 각급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임용권자가 실시한다.(항신설 16.3.16.)(개
정 16.8.12.)(항변경 20.6.23.)

④파견된 직원의 근무평정, 근무기간 및 인사관리 등 처우에 관하여는 파견 근무
지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항변경 16.3.16., 20.6.23.)

제10조의2(전보 또는 승급) 각급기관 소속 직원의 전보 또는 승급은 해당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한다.(조신설 15.1.6.)(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6.23.)

제11조 (겸임, 겸직)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특히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직무의 상·하급간에 겸임 또는 학원내 타기관의 직무를 겸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직이 면직되었을 때에는 겸직도 당연 면직된다.

제12조 (결격사유) 정관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04.8.10.)

제13조 (삭제)

제14조 (임시임용과 계약임용) ①이 법인과 각급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개정 15.1.6.)

②이 법인과 각급기관에서는 직원정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직종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각급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06.5.17., 15.1.6)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사기·신분보장

제1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시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포상) ①교직원으로서 근무에 정려하거나 학원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②특별히 유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당연퇴직)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6.23.)

1. 정관 제8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다만 제83조의제1항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호신설 20.6.23.)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호신설 20.6.23.)

3. 정년에 달한 때 (호신설 20.6.23.)

제18조 (면직)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본인이 퇴직을 희망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연간 15일 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20회 이상 무단조퇴, 지각한 자
5. 제7조제3항에 의거한 평가 결과가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될 때
6.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7.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 다만 이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명칭 변경 및 전문개정 20.6.23.)

제19조 (휴직) ①교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휴직 교직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학원발전에 공이 있는 자이거나 그 휴직사유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항신설 20.6.23.)

제20조 (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01.9.5.)

제21조 (직위의 해제) 정관 제48조 규정에 의한다.(조명칭 변경 및 전문개정 20.6.23.)

제22조 (강임)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감소로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제23조 (정년) ①교직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개정 14.08.14., 20.6.23.)
2. 사무직, 기술직, 별정직은 61세로 한다.(개정 01.9.5., 20.6.23.)
3.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호신설 07. 5.14)(개정 14.08.14)(호 변경 및 개정 20.6.23.)

②교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04.8.10., 14.08.14., 20.6.23.)

③(삭제 20.6.23.)

제 4 장 복무

제24조 (성실의무) 교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원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동료직원과 화목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장이탈 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 (친절·공정·비밀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친절·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직원은 학원 본연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1조 (정치운동 및 단체행동금지) 교직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07. 5. 14)

제32조 (삭제)

제 5 장 보수

제33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직원의 보수는 일반 표준생계비, 공무원의 봉급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적당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기관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직원 보수는 연봉제로 할 수 있다. (항신설 01.9.5)

③법인 소속 직원은 상지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이사장이 정한다. (항신설 15.1.6)

제34조 (실비변상) 교직원이 보수를 받는 이외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징계

제35조 내지 제39조 (2012. 3. 16. 교직원징계에관한규정 제정 시 폐지)

제 7 장 보칙

제40조 (이사장 보고 등) 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 포상, 근무성적 평

정 등을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5.1.6)

제41조 (근무성적 평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8.10)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직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분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8.10)

제42조 (삭제)(개정 04.8.10).

제43조 (이사회의 인사시책 권유, 시정명령 등) ①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인사시책과 교직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유할 수 있다.

②이사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시행한 교직원 인사처분(신규채용, 강임, 전보, 인사교류,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처분,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5.1.6)

제44조 (위임규정) 교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급기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 기능직의 계급 구분에 대한 경과 조치) 전 규칙 제4조 별표 1, 사무직과 1의 2, 기능직에 계기된 계급 구분은 이를 폐지하고 정관 제103조(정원) 별표에 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계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현재의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 ②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중 외부용역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용역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③이 규정은 2001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3조의 제2항은 2001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단 상지영서대학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상지의원은 2005년 3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3조의 제3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관 제103조(정원) 별표3의 기능직이 폐지될 때 까지 제3조 및 제8조의 기능직 관련 규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